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23호, 2009. 10. 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식품 영문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및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발급 예에 따라 처리

가. 수출식품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시 영업 허가(신고)서, 품목제조보고서를 구비 서류에서 삭제

다. 영문증명 신청업체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가능토록 서식 개정

나. 수출식품 영문증명서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라.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서식 개정

(1) 영문의 외국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별지서식 각 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는 경우 영문증명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9호, 2009. 10. 1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 2. 6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의무화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의 수출국 제조·가공업체 위생 점검의무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 점검에 필요한 점검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정보 및 훈련의 세부 점검기준 마련

- 가. 위생점검실시기관이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에 활용할 세부 점검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 시 객관적인 점검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2)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 소비자

- 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주기 마련(안 제3조)
- (1) 수입식품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 주기를 식품등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52호, 2009. 9. 1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와 아플라톡신의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과 살모넬라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가. 밀가루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안 제2, 5, 8), (1))
- (1) 밀가루 수입원의 다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밀가루 중 총아플라톡신 기준 설정
- 나. 포도주스 등의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 (안 제2, 5, 8), (5))
- (1) 오크라톡신 A 오염우려가 있는 포도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 (2) 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 포도주, 건포도의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안 제5, 3, 5), (7) 및 안 제5,